

국립국어원 공무원[학예연구직]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국립국어원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학예연구사	2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적용	국립국어원(서울)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국어	학예연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립국어원 학예업무 제반 사항국어·언어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9.11.)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국어	응시 자격 요건	경력	①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상당계급(7급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민간경력) 공무원 외 민간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요건 응시자의 경우에 한하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 *증빙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학위	○ 관련 분야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위에서 "전공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관련 분야 경력 : 국어 및 한국어 관련 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분야 ☞ 관련 분야 학위: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언어(정보)학, 국어정책학 등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학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기준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24.9.11.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증빙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을 구분하여 인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8.5.) 기준]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자격요건 학위는 제외)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3. 직무 관련 연구 논문(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 2021. 1. 1. 이후에 한하여 인정, 건별 차등우대, 학위논문 및 KCI등재후보지 제외																						
	4.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우대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5.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우대 -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시험의 종류</th> <th>기준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영어</td> <td>토플(TOEFL)</td> <td>PBT 590점(IBT 97점)</td> </tr> <tr> <td>토익(TOEIC)</td> <td>870점</td> </tr> <tr> <td>텡스(TEPS)</td> <td>452점</td> </tr> <tr> <td>지텔프(G-TEP)</td> <td>Level 2의 88점</td> </tr> <tr> <td>플렉스(FLEX)</td> <td>800점</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일본어</td> <td>JPT</td> <td>740점</td> </tr> <tr> <td>JLPT</td> <td>N2 150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국어</td> <td>신HSK</td> <td>5급 210점</td> </tr> </tbody> </table>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영어	토플(TOEFL)	PBT 590점(IBT 97점)	토익(TOEIC)	870점	텡스(TEPS)	452점	지텔프(G-TEP)	Level 2의 88점	플렉스(FLEX)	800점	일본어	JPT	740점	JLPT	N2 150점	중국어	신HSK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영어	토플(TOEFL)	PBT 590점(IBT 97점)																					
	토익(TOEIC)	870점																					
	텡스(TEPS)	452점																					
	지텔프(G-TEP)	Level 2의 88점																					
	플렉스(FLEX)	800점																					
일본어	JPT	740점																					
	JLPT	N2 150점																					
중국어	신HSK	5급 210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관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 ※ 공무원경력+민간경력 통산하되,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
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시험령 제27조제4항)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많은 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 제외
※ 수료는 불인정하며,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학위 1개만 인정
- **(2021. 1. 1.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직무분야 관련 논문으로, 2021.
1. 1. 이후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위논문 및 KCI등재후보지는 평가 제외(불인정)
-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당 검정시험 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유리한 1개만 인정**
※ TOEFL PBT 590점(IBT 97점) 이상 / TOEIC 870점 이상 / TEPS 452점 이상/ G-TELP(LevelⅡ) 88점 이상/
FLEX(영어) 80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산·HSK 5급 210점 이상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당 검정시험 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직무기술서)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지원자가 4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31명 이상인 경우 : 5배수 선발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때에는 형식심사 진행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직무 관련 주관식·약술형 평가) 실시 후 면접시험 평정 과정에 반영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직급	세부평가 계획
학예연구사	1. (출제) 직무능력평가를 위한 국어학(국어규범 포함) 분야 주관식·약술형 문제 2. (문제) 2문제 내외 3. (답안) 1문제당 A4 1장 내외 4. (시험시간) 50분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 7. 25.(목) ~ 8. 5.(월)	'24. 8. 1.(목) ~ 8. 5.(월)	'24. 9. 4.(수) 예정	'24. 9. 11.(수) 예정	'24. 10. 4.(금)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korean.go.kr>)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8. 1.(목) ~ 8. 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clarise375@korea.kr(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07511)	02-2669-9774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에 ‘학예연구사 응시자 ○○○’ 기입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제출서류 안내)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별지 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별지 서식 제6호
	학위 취득 사항 1부	별지 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구분	서류	비고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각 1부	
	학위연구 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 서식 제8~9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10호)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clarise375@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0. 4. ~ 11. 3.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하여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을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신분 : 2024.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연구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및 별표17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02-2669-9774)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국어	학예연구사	2명	국립국어원(서울)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학예업무 제반 사항 ○ 국어·언어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집행관리능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	---

필요 지식	○ 국어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전문 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 중 1개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상당계급(7급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민간경력) 공무원 외 민간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경력] 국어 및 한국어 관련 조사·연구 등과 관련된 분야	
학위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전문대학 제외) 해당 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위]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언어(정보)학, 국어정책학 등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요건 학위는 제외) - 학위별 차등 우대,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직무 관련 연구 논문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 2021. 1. 1. 이후에 한하여 인정, 건별 차등우대, 학위논문 및 KCI등재후보지 제외	
	○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복수 제출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영어	토플(TOEFL)	PBT 590점(IBT 97점)
	토익(TOEIC)	870점
	텡스(TEPS)	452점
	지텔프(G-TEP)	Level 2의 88점
	플렉스(FLEX)	800점
일본어	JPT	740점
	JLPT	N2 150점
중국어	신HSK	5급 210점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분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1호)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이력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2호)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3호) ○ 자필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4호)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5호) ○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6호) ○ 자필서명 필수
	학위 취득 사항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7호)
주민등록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되, 미포함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개명한 응시자의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사본) ※ 관련 학과에 대한 증명사항을 누락 없이 제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구분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학위.연구 논문 요약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별지 서식 제8~9호)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기재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2021.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학위논문 및 KCI 등재후보지는 우대요건 평가대상 제외 ○ 자필서명 필수
	학위.연구 논문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 학위.연구 논문 요약서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인사변동사항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당 검정시험 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해당 검정시험 기간의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국립국어원장 귀하

본인은 국립국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원서				
응시직급 및 분야		학예연구사 / 국어		
응시자격 (3가지 중 택1)		<input type="checkbox"/>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학위
※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학예연구사 / 국어		
응시자격 (3가지 중 택1)		<input type="checkbox"/>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학위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음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직급(분야)를 확인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택1**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 ③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없음'에 체크
- ⑥ 정부수입인지(7,000원)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에서 구입
 - *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방문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서식 제2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학예연구사 (국어)	응시 자격 요건	<input type="checkbox"/> 경력1	<input type="checkbox"/> 경력2	<input type="checkbox"/> 학위	성 명	
---------------	--	----------	---------------	----------------	------------------------------	------------------------------	-----------------------------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연구원		전임(주 00시간 근무) 비전임(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연구원		전임(주 00시간 근무) 비전임(주 00시간 근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연구논문	제목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게재지명 (발표기관)	발표(게재) 연월일	등재 구분	논문 기여도	학위 논문 여부
	한글명(영문명)				(SCI, SSCI, AB&CI, SCIE, SCOPUS, KCI 중택)		
자 격 증	종류	자격증명		취득점수(급수)	취득일		
	국어						
	외국어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별도경력만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음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응시직급 및 분야를 확인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 1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④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시)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자가 직무 분야에서 4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2.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1년의 경력은 '3. 우대 사항'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예시) 행정주사, 전산주사보, 사원, 공무원, 계약직, 기간제, 시간제 등

- 담당업무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내역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 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작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학위 취득한 학위 내역 기재

(예시) 학위기준으로 응시하는 자가 직무 분야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하였을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는 '2.응시자격'의 학위란에 기입하고, 그 이외의 직무 분야 관련 박사학위는 '3.우대요건'의 학위란에 기재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수료는 불인정)

[2021. 1. 1. 이후 논문]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 2021. 1. 1. 이후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는 '교신저자, 제1저자 등/ 연구자수'로 기재(ex. 제2저자 / 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자격증 어학 능력(국어, 외국어)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유효한 정규(정기)시험 성적에 한하여 작성
- 공고문에 기재된 공인 어학시험 종류·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만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가능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력·학위 및 기타 우대요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학예연구사(국어)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현재까지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에서의 실적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학예연구사(국어)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5매 이내 + 요약서 1매로 작성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1.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서식 제7호>

□ 학위 취득 사항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종류

-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응시자**가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하여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전형위원과의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사항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응시자격요건 혹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학위의 경우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 혹은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위의 경우 별도 증빙 제출 불필요)

<별지 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학위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제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명 :■ 영문명 :○ 심사 년월일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 1.
 - 가.
 - 1)
 - 가)
 - (1)
 -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 .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연구논문 요약서

성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논문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구분("√" 표기) : <input type="checkbox"/> SCI <input type="checkbox"/> SSCI <input type="checkbox"/> A&HCI <li style="padding-left: 100px;"><input type="checkbox"/> SCIE <input type="checkbox"/> SCOPUS <input type="checkbox"/>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	---

주요내용 요약

I.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II. 연구내용

III.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4. . .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